

工業所有權審判事例

特許拒絶査定

〈大法院 第4部 判決〉(1987. 2. 10)

事件番號 : 86 후 27

裁判長 : 황 선당

關與法官 : 정기승 · 이병후

1. 出願人(上告人) : 콘베어 인베스트먼츠 리미티드(대표 : 이안씨 · 크레이그)

2. 相對方(被上告人) : 특허청장

3. 原審決 : 特許廳 1985. 12. 30字, 1984年 抗告審判(絕) 第757號 審決

4. 主文 : 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費用은 出願人の 負擔으로 한다.

5. 理由

上告理由를 判断한다.

原審決이유에 의하면 原審은 본원發明이 그 特許出願되기전 공지된 간행물(1978. 5. 29자 特許된 美國特許公報 第4,156,593號, 이하 “인용예”라고 한다)의 기재내용과 대비하여 볼때 양자는 석탄분해물을 슬러리로 만든다는 점, 슬러리에 강력한 음파진동을 가하여 입자를 분쇄한다는 점은 서로同一한 것으로 인정되며 다만 본원發明은 機械的 수단에 의하여 석탄내의 불순물을 제거함에 대하여 인용예는 침출제를 슬러리에 첨가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 차이점은 인용예가 초음파 진동인 機械的 수단과 침출제를 첨가하는 化學的 수단을 병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원發明은 당업자이던 추고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본원發明이 위와같이 불순물이 제거된 석탄 슬러리에서 그 석탄입자 함량이 40중량퍼센트가 되도록 탈수시킨 다음 오일을 첨가시키고 그 오일이 첨가된 석탄슬러리를 다시 강력하게 교반하여 안정된 애열

존으로 하여 만드는 연료의 製造方法으로서 위 인용예에서는 이러한 공정을 찾아볼 수 없으나 위 공정은 본원發明 出願前에 이미 공지된 技術임을 알 수 있을뿐 아니라 본원發明은 위 인용예 및 위先行技術을 종합한데에 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종합하는데 격렬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인한 作用效果도 이를 公知된先行技術로부터 예측되는 효과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본원發明은 그 구성 및 作用效果면에서 進歩性이 있는發明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判示하였는 바, 일간 記錄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原審의 이러한 判断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特許要件의 전제가되는 본원發明 및 인용예의 技術內容에 대한 判断을 그릇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特許要件인 進歩性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上告를 棄却하고 上告費用은 敗訴者인 出願人の 負擔으로 하기로 關與法官의 意見이一致되어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